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1월 13일, 김광성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광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홍보(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 제안일자 : 2025. 11. 13.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2. 제안이유

-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홍보(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 다자녀가정의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6조(지원사업)에서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8조(중단 및 회수)에서 지원 중단 및 환수를, 안 제9조(홍보)에서 지원 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명시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므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대한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 차. (생략)
3. ~ 7. (생략)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506
----------	-----

발의연월일: 2025년 11월 12일

발 의 자 :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 남진삼, 심현정, 이창열 의원

1. 제안이유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대상(안 제4조)
- 라. 지원사업(안 제6조)
- 마. 홍보(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붙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10. 28. ~ 2025. 11. 4.(7일간), 의견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6. 공공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략)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6. 공공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 서 진
연락처	(033) 330 - 2124